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1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개인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합산)이고,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이하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단,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납입완료 후 연금수령시(연금개시후)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에서 계약자가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연금수령]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text{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

-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

[의료비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적립형에 한함)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1회 신청당 12개월(최소 3개월)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대체보험료(계약유지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비용))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다음 (1) 또는 (2)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

계약자가 해지환급금 등 제지금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나이 - 2세’ 연 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이내로 하며,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납입기간)의 200%입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연금의 종류는 어떻게 정하나요?

-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처음 보험가입 할 때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가능하며, 연금개시전까지 아래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적립형 거치형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즉시형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형	1년~20년 확정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다면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증기간 동안에는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연금을 확정지급 합니다.

Q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 A.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II. 보험가입 자격요건

1. 보험기간

구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2.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적립형 : 1년납 이상

이체 받은 후 이 보험계약의 납입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5년 이상(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체 되는 경우에는 5년 미만도 가능)이어야 한다.

다만,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보험회사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자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이체 받기 전 계약과 계약이체 받은 후 계약의 총 납입기간은 관련법규에 따라 5년 이상(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5년 미만도 가능)이어야 한다.

나. 거치형

- 계약이체부분 : 일시납

이체 받은 후 이 보험계약의 거치기간은 관련세법에 따라 5년 이상(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5년 미만도 가능)이어야 한다.

다만,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보험회사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자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이체 받기 전 계약과 계약이체 받은 후 계약의 총 거치기간은 관련법규에 따라 5년 이상(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5년 미만도 가능)이어야 한다.

다. 즉시형

- 계약이체부분 : 일시납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보험회사로 이체되고 이체전 계약의 납입기간이 5년이상(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5년 미만도 가능)이어야 한다.

3.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가입나이

구분	보험종목	내용
연금지급개시나이(Y)	적립형 / 거치형	만 55세 ~ 80세
	적립형	0세 ~ (Y - 보험료 납입기간)세
	거치형	0세 ~ (Y - 1)세
	즉시형	만 55세 ~ 80세

4. 연금지급형태

적립형 / 거치형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즉시형	종신연금형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형	1년 ~ 20년 확정형, 100세((100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약관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

(1) 적립형

-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 기본보험료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으로 하며,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개시 전까지의 기간(이하 '거치기간'이라 한다)에 따른 최저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2) 거치형, 즉시형

-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이전금액(일시납 보험료)을 한도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총 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의 200%
-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12 × 200%

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Ⅲ.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	(주계약)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 계약이전특약	(의무부가특약)
+ 지정대리인청구서비스특약	(제도성특약)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 계약이전특약은 적립형 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부별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가. 적립형, 거치형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중)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 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주)

- ①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②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③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일(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⑥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⑦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⑧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⑨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⑩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란 '10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나. 즉시형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을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1년~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 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주)

- ① 「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적립액을 말합니다.
- 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일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일(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④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⑥ 계약자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요건 없음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 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요건 없음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이 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이 상	요건 없음

(1)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3)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5년이 상	4년이 상	3년이 상	2년이 상	1년이 상	요건없음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 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4년이 상	3년이 상	2년이 상	1년이 상	요건없음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이 상	2년이 상	1년이 상	요건없음					

(4)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 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이 상	2년이 상	1년이 상	요건없음					

- ⑦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1년~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1년~2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 ⑧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⑨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형 확정연금지급기간의 '100세'란 '10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가. 계약의 무효관련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나.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행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Ⅳ.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적용이율은 연 2.50%이며, 동 이율은 적립액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2. 적용위험률(개인연금사망률)

Q : 적용위험률(개인연금사망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사망률이 높으면 연금액은 올라가고, 낮으면 연금액은 내려갑니다.

연금지급개시나이	개인연금사망률	
	남자	여자
55세	0.001470	0.000620
65세	0.002480	0.000810
75세	0.008460	0.003310

※ 개인연금사망률의 가입나이 기준은 40세 입니다.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 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적립이율

적립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 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으로서 2021년 1월 현재 적립이율은 2.65%입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적립이율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 산출방법 요약

-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기준이율 = 내부지표 $\times (1 - \alpha)$ + 외부지표 $\times \alpha$
- 내부지표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외부지표는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출함.

5. 최저보증이율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해드리는 적립이율의 최저한도로서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입니다.

V.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 상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보험」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VI.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하나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증도해지지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예시

□ 적립형

[기준: 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경과 기간	최저보증이율(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900,000	869,708	96.6%	869,708	96.6%	900,000	869,708	96.6%	869,708	96.6%
6개월	1,800,000	1,742,128	96.8%	1,742,128	96.8%	1,800,000	1,742,128	96.8%	1,742,128	96.8%
9개월	2,700,000	2,617,261	96.9%	2,617,261	96.9%	2,700,000	2,617,261	96.9%	2,617,261	96.9%
1년	3,600,000	3,495,106	97.1%	3,495,106	97.1%	3,600,000	3,495,106	97.1%	3,495,106	97.1%
2년	7,200,000	7,033,900	97.7%	7,033,900	97.7%	7,200,000	7,033,900	97.7%	7,033,900	97.7%
3년	10,800,000	10,616,929	98.3%	10,616,929	98.3%	10,800,000	10,616,929	98.3%	10,616,929	98.3%
4년	14,400,000	14,244,747	98.9%	14,244,747	98.9%	14,400,000	14,244,747	98.9%	14,244,747	98.9%
5년	18,000,000	17,917,912	99.5%	17,917,912	99.5%	18,000,000	17,917,912	99.5%	17,917,912	99.5%
6년	21,600,000	21,587,495	99.9%	21,587,495	99.9%	21,600,000	21,587,495	99.9%	21,587,495	99.9%
7년	25,200,000	25,293,775	100.4%	25,293,775	100.4%	25,200,000	25,293,775	100.4%	25,293,775	100.4%
8년	28,800,000	29,037,117	100.8%	29,037,117	100.8%	28,800,000	29,037,117	100.8%	29,037,117	100.8%
9년	32,400,000	32,817,893	101.3%	32,817,893	101.3%	32,400,000	32,817,893	101.3%	32,817,893	101.3%
10년	36,000,000	36,636,476	101.8%	36,636,476	101.8%	36,000,000	36,636,476	101.8%	36,636,476	101.8%
15년	54,000,000	55,723,020	103.2%	55,723,020	103.2%	54,000,000	55,723,020	103.2%	55,723,020	103.2%
20년	72,000,000	75,536,126	104.9%	75,536,126	104.9%	72,000,000	75,536,126	104.9%	75,536,126	104.9%
25년	72,000,000	78,215,846	108.6%	78,215,846	108.6%	72,000,000	78,215,846	108.6%	78,215,846	108.6%
30년	72,000,000	80,997,574	112.5%	80,997,574	112.5%	72,000,000	80,997,574	112.5%	80,997,574	112.5%

[기준: 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경과 기간	Min[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65%)]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900,000	871,155	96.8%	871,155	96.8%	900,000	871,155	96.8%	871,155	96.8%
6개월	1,800,000	1,747,191	97.1%	1,747,191	97.1%	1,800,000	1,747,191	97.1%	1,747,191	97.1%
9개월	2,700,000	2,628,110	97.3%	2,628,110	97.3%	2,700,000	2,628,110	97.3%	2,628,110	97.3%
1년	3,600,000	3,513,910	97.6%	3,513,910	97.6%	3,600,000	3,513,910	97.6%	3,513,910	97.6%
2년	7,200,000	7,106,883	98.7%	7,106,883	98.7%	7,200,000	7,106,883	98.7%	7,106,883	98.7%
3년	10,800,000	10,780,698	99.8%	10,780,698	99.8%	10,800,000	10,780,698	99.8%	10,780,698	99.8%
4년	14,400,000	14,537,174	101.0%	14,537,174	101.0%	14,400,000	14,537,174	101.0%	14,537,174	101.0%
5년	18,000,000	18,378,171	102.1%	18,378,171	102.1%	18,000,000	18,378,171	102.1%	18,378,171	102.1%
6년	21,600,000	22,305,590	103.3%	22,305,590	103.3%	21,600,000	22,305,590	103.3%	22,305,590	103.3%
7년	25,200,000	26,321,375	104.4%	26,321,375	104.4%	25,200,000	26,321,375	104.4%	26,321,375	104.4%
8년	28,800,000	30,427,517	105.7%	30,427,517	105.7%	28,800,000	30,427,517	105.7%	30,427,517	105.7%
9년	32,400,000	34,626,046	106.9%	34,626,046	106.9%	32,400,000	34,626,046	106.9%	34,626,046	106.9%
10년	36,000,000	38,919,042	108.1%	38,919,042	108.1%	36,000,000	38,919,042	108.1%	38,919,042	108.1%
15년	54,000,000	61,877,116	114.6%	61,877,116	114.6%	54,000,000	61,877,116	114.6%	61,877,116	114.6%
20년	72,000,000	87,536,842	121.6%	87,536,842	121.6%	72,000,000	87,536,842	121.6%	87,536,842	121.6%
25년	72,000,000	97,634,692	135.6%	97,634,692	135.6%	72,000,000	97,634,692	135.6%	97,634,692	135.6%
30년	72,000,000	108,920,833	151.3%	108,920,833	151.3%	72,000,000	108,920,833	151.3%	108,920,833	151.3%

[기준: 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경과 기간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65%)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900,000	871,733	96.9%	871,733	96.9%	900,000	871,733	96.9%	871,733	96.9%
6개월	1,800,000	1,749,216	97.2%	1,749,216	97.2%	1,800,000	1,749,216	97.2%	1,749,216	97.2%
9개월	2,700,000	2,632,449	97.5%	2,632,449	97.5%	2,700,000	2,632,449	97.5%	2,632,449	97.5%
1년	3,600,000	3,521,432	97.8%	3,521,432	97.8%	3,600,000	3,521,432	97.8%	3,521,432	97.8%
2년	7,200,000	7,136,182	99.1%	7,136,182	99.1%	7,200,000	7,136,182	99.1%	7,136,182	99.1%
3년	10,800,000	10,846,723	100.4%	10,846,723	100.4%	10,800,000	10,846,723	100.4%	10,846,723	100.4%
4년	14,400,000	14,655,593	101.8%	14,655,593	101.8%	14,400,000	14,655,593	101.8%	14,655,593	101.8%
5년	18,000,000	18,565,398	103.1%	18,565,398	103.1%	18,000,000	18,565,398	103.1%	18,565,398	103.1%
6년	21,600,000	22,578,813	104.5%	22,578,813	104.5%	21,600,000	22,578,813	104.5%	22,578,813	104.5%
7년	25,200,000	26,698,583	105.9%	26,698,583	105.9%	25,200,000	26,698,583	105.9%	26,698,583	105.9%
8년	28,800,000	30,927,528	107.4%	30,927,528	107.4%	28,800,000	30,927,528	107.4%	30,927,528	107.4%
9년	32,400,000	35,268,539	108.9%	35,268,539	108.9%	32,400,000	35,268,539	108.9%	35,268,539	108.9%
10년	36,000,000	39,724,587	110.3%	39,724,587	110.3%	36,000,000	39,724,587	110.3%	39,724,587	110.3%
15년	54,000,000	63,839,950	118.2%	63,839,950	118.2%	54,000,000	63,839,950	118.2%	63,839,950	118.2%
20년	72,000,000	91,324,495	126.8%	91,324,495	126.8%	72,000,000	91,324,495	126.8%	91,324,495	126.8%
25년	72,000,000	103,878,184	144.3%	103,878,184	144.3%	72,000,000	103,878,184	144.3%	103,878,184	144.3%
30년	72,000,000	118,185,761	164.1%	118,185,761	164.1%	72,000,000	118,185,761	164.1%	118,185,761	164.1%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와 현재(2021년 1월)의 공시이율 2.65% 중 낮은 이율, 현재(2021년 1월)의 공시이율 2.6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4.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6.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립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7.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 계약이전특약의 환급률예시는 거치형과 동일합니다.

□ 거치형

[기준: 55세, 60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경과 기간	최저보증이율(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000	49,604,609	99.2%	49,604,609	99.2%	50,000,000	49,604,609	99.2%	49,604,609	99.2%
6개월	50,000,000	49,683,984	99.4%	49,683,984	99.4%	50,000,000	49,683,984	99.4%	49,683,984	99.4%
9개월	50,000,000	49,763,125	99.5%	49,763,125	99.5%	50,000,000	49,763,125	99.5%	49,763,125	99.5%
1년	50,000,000	49,842,031	99.7%	49,842,031	99.7%	50,000,000	49,842,031	99.7%	49,842,031	99.7%
2년	50,000,000	50,163,025	100.3%	50,163,025	100.3%	50,000,000	50,163,025	100.3%	50,163,025	100.3%
3년	50,000,000	50,488,032	101.0%	50,488,032	101.0%	50,000,000	50,488,032	101.0%	50,488,032	101.0%
4년	50,000,000	50,817,101	101.6%	50,817,101	101.6%	50,000,000	50,817,101	101.6%	50,817,101	101.6%
5년	50,000,000	51,150,284	102.3%	51,150,284	102.3%	50,000,000	51,150,284	102.3%	51,150,284	102.3%

[기준: 55세, 60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경과 기간	Min[평균공시이율 2.25%,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65%)]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000	49,728,297	99.5%	49,728,297	99.5%	50,000,000	49,728,297	99.5%	49,728,297	99.5%
6개월	50,000,000	49,931,172	99.9%	49,931,172	99.9%	50,000,000	49,931,172	99.9%	49,931,172	99.9%
9개월	50,000,000	50,133,625	100.3%	50,133,625	100.3%	50,000,000	50,133,625	100.3%	50,133,625	100.3%
1년	50,000,000	50,335,656	100.7%	50,335,656	100.7%	50,000,000	50,335,656	100.7%	50,335,656	100.7%
2년	50,000,000	51,164,552	102.3%	51,164,552	102.3%	50,000,000	51,164,552	102.3%	51,164,552	102.3%
3년	50,000,000	52,012,098	104.0%	52,012,098	104.0%	50,000,000	52,012,098	104.0%	52,012,098	104.0%
4년	50,000,000	52,878,714	105.8%	52,878,714	105.8%	50,000,000	52,878,714	105.8%	52,878,714	105.8%
5년	50,000,000	53,764,829	107.5%	53,764,829	107.5%	50,000,000	53,764,829	107.5%	53,764,829	107.5%

[기준: 55세, 60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경과 기간	2021년 1월 현재 공시이율(2.65%) 적용									
	남자					여자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실납입보험료 (A)	해지환급금 (B)	환급률 (B/A)	적립금 (C)	적립률 (C/A)
3개월	50,000,000	49,777,772	99.6%	49,777,772	99.6%	50,000,000	49,777,772	99.6%	49,777,772	99.6%
6개월	50,000,000	50,030,047	100.1%	50,030,047	100.1%	50,000,000	50,030,047	100.1%	50,030,047	100.1%
9개월	50,000,000	50,281,825	100.6%	50,281,825	100.6%	50,000,000	50,281,825	100.6%	50,281,825	100.6%
1년	50,000,000	50,533,106	101.1%	50,533,106	101.1%	50,000,000	50,533,106	101.1%	50,533,106	101.1%
2년	50,000,000	51,567,927	103.1%	51,567,927	103.1%	50,000,000	51,567,927	103.1%	51,567,927	103.1%
3년	50,000,000	52,630,171	105.3%	52,630,171	105.3%	50,000,000	52,630,171	105.3%	52,630,171	105.3%
4년	50,000,000	53,720,564	107.4%	53,720,564	107.4%	50,000,000	53,720,564	107.4%	53,720,564	107.4%
5년	50,000,000	54,839,853	109.7%	54,839,853	109.7%	50,000,000	54,839,853	109.7%	54,839,853	109.7%

(주)

1.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 평균공시이율 2.25%와 현재(2021년 1월)의 공시이율 2.65% 중 낮은 이율, 현재(2021년 1월)의 공시이율 2.6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3. 실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4. 공시이율은 매1개월마다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내 1.25%,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75%입니다.
5.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6.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현재 적립이율이 경과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7.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무배당 하나로연금저축 계약이전특약의 환급률예시는 거치형과 동일합니다.

Ⅶ. 모집수수료율

Q : 모집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모집수수료란 보험회사가 내부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에게 보험판매, 계약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 해당사항 없음

Ⅷ. 공제금액 공시에 대한 사항

1. 기본비용 및 수수료

□ 적립형

(기준: 남자3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기본보험료 30만원, 계약이전특약 납입보험료 5,000만원)

구분	1년~7년	8년~10년	11년~20년	21년~30년
적립형	3.5667%~3.5667%	3.5667%~3.5667%	3.5667%~3.5667%	1.0667%~1.0667%

구분	1차월	2차월 이후
계약이전특약	1.0000%	0.0500%~0.0500%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합산한 금액을 월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적립형	계약체결비용	-	-
	보험관계 비용	매월	납입기간 이내: 기본보험료의 3.57% (10,700원) 납입기간 이후: 기본보험료의 1.07% (3,200원)
	위험보험료	-	-
	연금수령 기간중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계약 이전 특약	계약체결비용	-	-
	보험관계 비용	매월	1차월: 일시납보험료의 1% (500,000원) 2차월 이후: 일시납보험료의 0.05% (25,000원)
	위험보험료	-	-
	연금수령 기간중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 거치형

(기준: 남자55세, 56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1차월	2차월 이후
1.0000%	0.0500%~0.0500%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합산한 금액을 월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	-
	계약관리비용	매월	1차월: 일시납보험료의 1% (500,000원) 2차월 이후: 일시납보험료의 0.05% (25,000원)
	위험보험료	-	-
연금수령 기간중	연금수령기간 중의 계약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 즉시형

(기준: 남자60세, 60세 연금개시, 일시납, 기본보험료 5,000만원)

계약체결시	
1.0000%	

※ 상기 비율은 경과기간별 보험계약체결비용, 보험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합산한 금액을 월기본보험료로 나눈 값임.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체결비용	-	-
	계약관리비용	계약 체결시	일시납보험료의 1% (500,000원)
	위험보험료	-	-
연금수령 기간중	연금수령기간 중의 계약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2. 해지공제액 : 해당사항 없음

3.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